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공직후보자 등 인재 발굴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 및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398”을 “4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7”을 “3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2”를 “373”으로, 전문경력관 “6”을 “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7”을 “1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5”를 “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5”를 “158”로 한다.

별표 3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인사혁신처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제30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 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u>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u>」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u>제4조의2제2항제3호</u>,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u>제30조(한시정원) ① 삭제</u> ②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 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 ----- ----- <u>제4조의2제2항제5호</u>----- ----- ----- ----- ----- ----- . ----- ----- ----- ----- -----. ②·③ (현재와 같음) <u>제30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u>

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둔다.

③ 삭 제

④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
처에 둔다.

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98</u>	<u>400</u>	+2
·	·	·	
·	·	·	
일반직 계	<u>397</u>	<u>399</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2</u>	<u>373</u>	+1
·	·	·	
전문경력관	<u>6</u>	<u>7</u>	+1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7</u>	<u>190</u>	+3
•	•	•	
•	•	•	
일반직 계	<u>185</u>	<u>188</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5</u>	<u>158</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